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2611
------------	------

2021. 9. 8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21. 8. 11. 장상기 의원 1인 발의 (2021. 8. 18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개별 운영 중인 정비사업관리시스템(클린업, e조합, 분담금 프로그램)을 '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'으로 통합 구축·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정비사업시스템,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 등의 용어를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히 함(안 제69조)

4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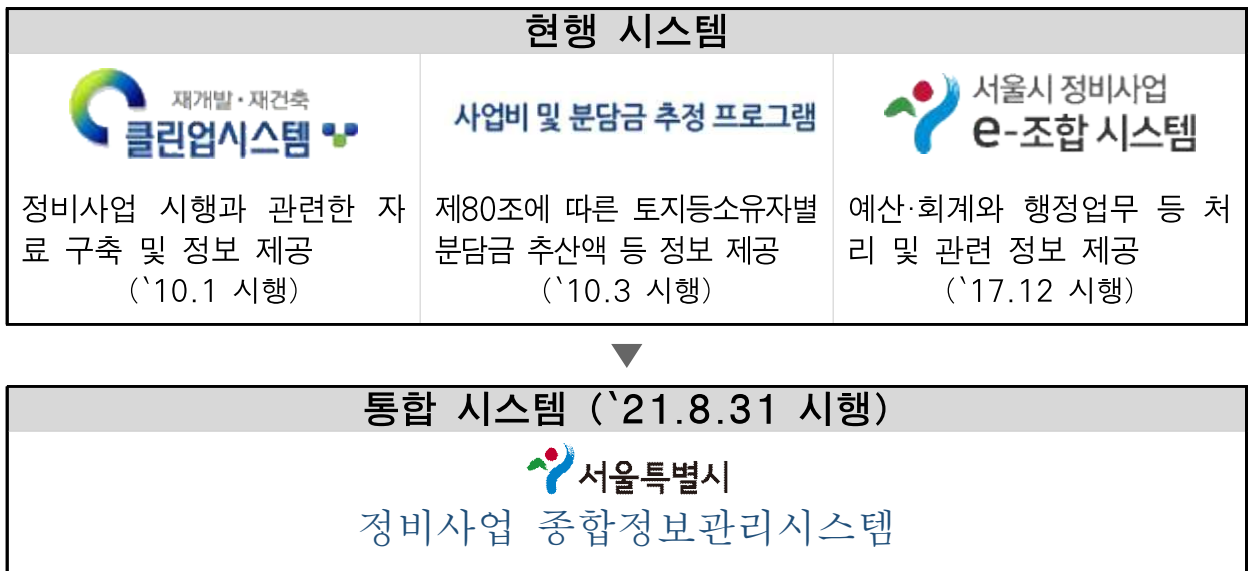
- 이 개정조례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(이하 '도시정비법') 제119조¹⁾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

1) 제11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) ① 시·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서울시가 운영해오던 3개의 정비사업 관련시스템을 ‘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’(이하 ‘종합정보관리시스템’)으로 통합 구축하게 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) 상의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자 장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2021.8.18.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- 「도시정비법」 제119조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‘클린업시스템(‘10.1월 시행)’과 ‘분담금 추정 프로그램(‘10.3월 시행)’, ‘e-조합시스템(‘17.12월 시행)’ 등 총 3가지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음.
- 그간 관련 시스템이 3개로 분리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능의 중복,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,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(‘20.3.5. 착수)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음.



-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상 기존의 시스템 명칭을 ‘종합정보관리시스템’으로 통일²⁾하고, 각 시스템에 대한 설명(제69조제1

2) 제15조제6항·제9항, 제24조제1항, 제69조제2항·제4~6항, 제70조제1항, 제85조

항)은 통합시스템의 세부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는 등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특이사항은 없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6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</p> <p>①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(이하 "정비사업 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한다.</p> <p>1. <u>클린업시스템</u> :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</p> <p>2. <u>분담금 추정 프로그램</u>: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</p> <p>3. <u>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</u> : 예산·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</p>	<p>제6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</p> <p>① ----- ----- 위한 정비사업관리 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-----.</p> <p>1. <u>정보공개</u> :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</p> <p>2. <u>조합업무지원</u> : 추진위원회·조합의 예산·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 업무 등 처리</p> <p>3. <u>분담금 추정 프로그램</u>: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</p>

담당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
연락처	02-2180-8208
이메일	urbanth@seoul.go.kr

【붙임】 관련 규정
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제11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) ① 시·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제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,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
2. 설계자·시공자·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
3. 추진위원회·주민총회·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·대의원회의 의사록
4. 사업시행계획서
5. 관리처분계획서
6.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7. 회계감사보고서
8. 월별 자금의 입금·출금 세부내역
9. 결산보고서
10.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
11.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

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, 개략적인 내용, 공개장소, 열람·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·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·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토지등소유자 명부
2. 조합원 명부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

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. 이 경우 비용

납부의 방법,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⑥ 제4항에 따라 열람·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·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○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
제6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(이하 "정비사업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한다.

1. 클린업시스템 :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
 2.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: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
 3.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 : 예산·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을 말한다)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
- 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(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)은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·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사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.>

제80조(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) 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,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"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"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"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정보"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.